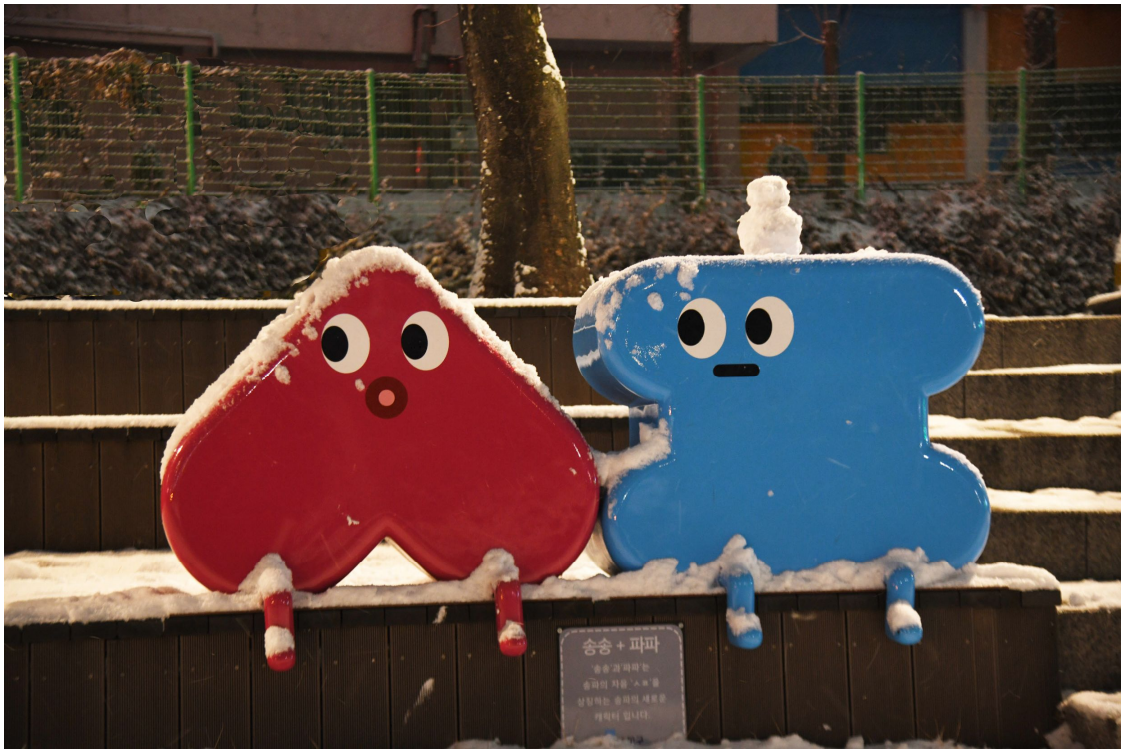
서울을 이끄는 송파

송파구보

송파구 홈페이지 | www.songpa.go.kr

2022. 1. 20.(목) 제1802호



※ 송파구보 발행 안내

· 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구보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송파구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에 게재합니다.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송파구 SONGPA-GU

발행인 : 송파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02-2147-22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차 례

◉ 고 시

제21호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3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9
제2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11
제2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15
제27호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17

◉ 공 고

제93호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 19
제10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제1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40
제14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입법예고 ····· 45

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1호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다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 “백제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로 변경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백제역사문화권에 대한 국 · 내외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백제역사문화권 홍보 및 문화관광, 공동 브랜드와 문화상품 개발 등

에 관한 사항

6. 백제역사문화권 기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 및 회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백제역사문화권과 백제 유적 ·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임원은 상임고문,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상임고문은 광역단체장으로 한다.

③ 회장은 기초단체장 중 1인으로 한다.

④ 부회장은 기초단체장 중 2인으로 한다.

⑤ 감사는 기초단체장 중 2인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지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상임고문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회원단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하며 정부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에 참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협의안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3월, 9월)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토의와 표결권을 갖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 · 법인 ·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실무협의회, 전문·자문위원, 사무국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소속 업무담당 실 · 국장 또는 부서장이 되고,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 · 국장 또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업무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전문 · 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전문·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

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6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백제역사문화권 관련 조사 연구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 회계관리 및 사업계획 수립
3.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17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18조(회계운영) ① 일반회계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특별회계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연구재단 설립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3.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제19조(수당 등) ①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자문위원과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송파위례리슈빌 아파트 : 서울시 송파구 위례송파로 124

○ 금연구역 지정 번호: 제2022-1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2. 1. 20.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 및 홍보 기간**: 2022. 1. 20. ~ 2022. 3. 19.(**2개월**)

○ **과태료 부과일**: 2022. 3. 20.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4. 고시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보건소 금연관리팀(☎2147-34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 구 신축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5길 3-3 외 23건

연번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7-3085)에 문의 또는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위 도로명주소는 고시이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순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7-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5길 3-3	2010.06.04.	문정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83-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길 16-6	2010.06.04.	송이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14-1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4길 18	2010.06.04.	백제고분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 12	2010.06.04.	위례성대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50-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5길 6	2010.06.04.	가락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7-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4-2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7-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4-3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7-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4-4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7-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4-5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7-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4-6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7-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4-7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7-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4-8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7-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8-2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8-3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8-4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70-2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순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70-3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70-4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72-2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72-3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72-4	2010.06.04.	석촌호수를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52-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길 20-52	2010.06.04.	백제고분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1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0길 13-15	2010.06.04.	백제고분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0길 13-17	2010.06.04.	백제고분로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도로명부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 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48 외 9건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7-3085)에 문의 또는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신청에 의해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순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41-1,4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48	20220120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166-1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26	20220120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166-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28	20220120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166-3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0	20220120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12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12-12	20220120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3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4길16	20220120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144-9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6길31-19	20220120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144-9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6길31-21	20220120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144-9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6길31-23	20220120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144-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6길31-15	20220120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7호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1-3 필지상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락동 161-3번지 / 8,21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병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송파구 중대로 218 신광빌딩 601호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2. 1. 18.

6.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 수	높이(m)	건축물의 용도
8,214.0	45.63	260.04	21,360.14	지하3층 /지상25층	79.5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 구분	주택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59	74	84A	84B	84C	99
분 양	아파트	4	179	13	23	54	21	22	46

8.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근린생활시설면적(㎡)
		59	74	84A	84B	84C	99	
계	179	13	23	54	21	22	46	276.75
토지등소유자	145	8	21	47	19	19	31	
일반분양	29	4	1	6	2	3	13	
보류시설	5	1	1	1	-	-	2	

9.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주거사업과(☎02-2147-2903)에 비치 보관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시 제2022-93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 · 공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1.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가. 공시기준일: 2021년 (매년 1월 1일 기준)

나. 공시대상: 풍납동 503-4

다. 공시내용

- 개별주택의 지번 및 면적
- 당초 가격 및 정정 개별주택가격

라. 공시장소: 구 게시판, 송파구 누리집

2. 이의신청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2022. 1.20.~2022. 2.18.)이내에 송파구청 누리집(www.songpa.go.kr) 및 세무행정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3. 시행일

이 공시는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2-10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2021.12.23.)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용어 및 조항 정비(안제2조, 제5조, 제7조 등)

- 상위법과 중복된 정의조항 삭제

- 용어정비: 행정정보의 공표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안제12조)

- 외부전문가 위촉(3분의 2) 변경 반영

다. 조례 별표[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의 삭제

-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동일내용 중복으로 조례 별표 삭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여권과(전화 2147-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찬 · 반 여부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2층 민원여권과
- 연 락 처: Tel. 02-2147-2312(FAX : 2147-38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와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이 중 3분의 2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주관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삭 제>
2.~3.(생략)	2.~3.(현행과 같음)
4. “집행기관”이란 구(구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구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등을 말한다.	4.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현 행	개 정 안
5. “공개”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삭 제>
6.(생략)	6.(현행과 같음)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형태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생 략)	1.~6.(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주기, 시기 및 형태 등은 별표와 같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 국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주관부서장·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제12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이 중 3분의 2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 국장으로 하고, 주관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 행	개 정 안
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별표] <개정 2012.11.8>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삭 제>

구분			공표방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구민생활에 매우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정보	행정계획 및그 실시 상황에 관한정보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과	연1회	2월중	인터넷
		중장기종합계획	기획예산과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인터넷
		부문별중장기계획	기획예산과 해당부서	수시		인터넷
		중요한기본계획	기획예산과 해당부서	수시		인터넷
		조례·규칙 입법예고, 공포	해당부서	수시	수시	인터넷 구보
	구민의 생명·신체 및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수질검사	맑은환경과	연1회	7월중	인터넷
		대기오염도 검사	맑은환경과	수시	수시	인터넷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단속 현황	맑은환경과	수시	수시	인터넷
		방범용CCTV설치 현황	자치안전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인터넷
	구민의 일상생활과관련된 정보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세외 수입의 조정계획	세무2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인터넷
		지방세이의신청 결과 및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세무1과	연1회	1월중	인터넷
		각종공청회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공청회 개최일부터 1개월이내	인터넷
		개별공시지가	토지관리과	연2회	6월중 11월중	인터넷
		노인, 아동, 복지시설 현황	노인청소년과	수시	수시	인터넷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사회복지과	연2회	6월중 12월중	인터넷	
		자전거 도로현황	녹색교통과	수시	수시	인터넷	
		하수도통계자료	치수과	연1회	4월중	인터넷	
		관광시설 현황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수시	수시	인터넷	
		관광호텔 현황 및 신축중인 관광호텔 현황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수시	수시	인터넷	
		주택의 종류 및 보급률 현황	주거정비과	연1회	1월중	인터넷	
		건축허가 및 착공 현황	건축과	매월	익월초	인터넷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	건축과	매월	익월초	인터넷	
		공원녹지시설현황	푸른도시과	연1회	1월중	인터넷	
		공원내 화장실현황	푸른도시과	연1회	1월중	인터넷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현황	보건위생과	분기별	분기	인터넷	
		숙박업 및 목욕장업 현황	보건위생과	분기별	분기	인터넷	
		의료시설 현황	의약과	분기별	분기	인터넷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클린도시과	연1회	2월중	인터넷	
		석유, LPG, LNG, 고압가스판매소(충전소) 현황	경제진흥과	연1회	2월중	인터넷	
		공장,대규모점포, 전통시장 현황	경제진흥과	연1회	2월중	인터넷	
		주민등록인구현황	자치안전과	월1회	익월초	인터넷	
		도서관 현황	교육협력과	수시	도서관 개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터넷	
구정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례」 상 공개대상정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내역	재무과	수시	매월	인터넷	
		분기별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내역	재무과	연4회	3,6,9,12월중	인터넷	
		1억원 이상의공사	해당부서	수시	지출원인행위후 7일이내	인터넷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해당부서	수시	지출원인행위후 7일이내	인터넷	
		2천만원 이상의 물품제조 구매	해당부서	수시	지출원인행위후 7일이내	인터넷	

현 행							개 정 안
		1천만원 이상의 완제품 물품 구매	해당부서	수시	지출원인행위 후 7일이내	인터넷	
	공공사업 에 관한 정보	투자사업 심사평가 결과	기획예산과	분기별	평가완료후	인터넷	
		투자심사 통과사업 목록	기획예산과	분기별	심사종료후	인터넷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해당부서	수시	사안발생시	인터넷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과결과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예산	기획예산과	연1회	2월중	인터넷	
		기금	기획예산과	연1회	2월중	인터넷	
		결산	재무과	연1회	7월중	인터넷	
		차입금	재무과	수시	사안발생시	인터넷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재무과	수시	사안발생시	인터넷	
		재정운용계획, 상황	기획예산과	연1회	8월중	인터넷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예산과	연1회	1월중	인터넷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기획예산과	연1회	12월중	인터넷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5급이상 간부업무추진비	전부서	분기별	다음분기초	인터넷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융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해당부서	수시	수시	인터넷	
		보조사업 실시지침	해당부서	수시	수시	인터넷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자치안전과	연1회	3월중	인터넷	
		보조금 정산보고서	해당부서	반기별	2,8월중	인터넷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심의회 상정된 청구내용 및 결정사항	민원여권과	수시	수시	인터넷	
	그 밖에 기본 현황	국적별 외국인 현황	민원여권과	연1회	1월중	인터넷	
		등록장애인 현황	사회복지과	분기별	분기초	인터넷	
		국민기초생활보장수	사회복지과	월별	매월초	인터넷	

현 행	개 정 안

		급자 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도시계획과	수시	수시	인터넷
		통계연보	정보통신과	연1회	1월중	인터넷
		사업체 현황	정보통신과	연1회	4월중	인터넷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 ·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 ·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12. 23.]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1.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2021. 6. 22.>
3.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6. 22.>

1. 식품 ·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 · 의료 · 교통 · 조세 · 건축 · 상하수도 · 전기 ·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21. 6. 22.]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삭제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22.>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삭제 <2021. 6. 22.>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 작성자: 주 무 관 행정7급 심 은 희
- 검토자: 기록물관리팀장 사무운영6급 김 미 석
- 결재자: 민원여권과장 행정5급 조 희 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2-1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문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정비되어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참조: 부동산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전화: 02-2147-3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찬 · 반 여부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2층 부동산정보과(신천동)
- 연 락 처 : Tel. 02-2147-3082(FAX : 02-2147-3881)

※ 자세한 폐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 songpa. go. 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로명주소법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 · 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21. 6. 9., 전부개정]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 · 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2-14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1.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자치구별로 상이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무조사 연기신청 기한 신설(안 제12조)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자치구 간 납세자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47-2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찬 · 반 여부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관 4층 감사담당관(신천동)
- 연 락 처 : Tel. 02-2147-2089(FAX : 02-2147-3853)

※ 자세한 시행규칙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 songpa. go. 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의견청취 등)

③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및 의견청취 등) ③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